

ISBP(信用狀 國際標準銀行慣習)의 主要內容과 適用上의 問題點에 관한 研究*

徐正斗**

-
- I. 序言
 - II. ISBP의 意義와 背景
 - III. ISBP의 主要內容
 - IV. ISBP의 效果와 問題點
 - V. 結言 - 향후과제
-

I. 序言

세계화 시대의 우리 경제는 점차 대외의존도가 높아지고 수출입규모가 확대되면서 貿易代金決済에 관한 클레임이 더욱 복잡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무역선진국의 일원으로서 수출입의 UNPAID 사고를 줄이고 세계 무역관습을 주도하면서 수출입시장을 확장해 나가야 할 시점에 있다.

최근 ICC(국제상업회의소)는 신용장거래의 하자서류로 인한 클레임을 줄이고자 수 년 동안의 집중적인 연구작업을 거쳐 “貨換信用狀 書類審査를 위한 國際標準銀行慣習”(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Letters: ISBP)을 제정하였다.

ISBP는 UCP(신용장 통일규칙)의 효력을 변경함이 없이 이를 일상업무에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설명한 보완서로서, 실무가들에게는 성문화된 國際標準銀行慣習을 제공하여 하자서류의 발생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나아가 신용장의 자문가나 연구가, 법조인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 본 연구는 2003년도 湖原大學校 敎內學術研究造成費의 지원에 의한 것임.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부 교수.

따라서 본 연구는 ISBP가 제정된 이후 이를 소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ISBP와 UCP 500의 관계, “國際標準銀行慣習”의 개념, ISBP의 제정배경과 구성체계를 개관하고, ISBP의 일반원칙과 심사대상서류인 환어음, 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ISBP의 主要內容을 요약하며, ISBP의 효과와 문제점 및 향후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덧붙여 본 연구는 필자를 처음 학문의 길로 이끌어 주신 屯南 梁暎煥 先生님의 古稀를 기념하며, 앞으로도 오래도록 강건하시어 후학들의 학술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지속적인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시작하고자 한다.

II. ISBP의 意義와 背景

1. ISBP의 意義

(1) ISBP와 UCP 500의 關係

“ISBP”(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라 함은 UCP 500(신용장 통일규칙)의 적용에 관한 實務上的 補完書(practical complement)로서, 2002년 10월 ICC 은행위원회에 의하여 제정된 貨物信用狀의 서류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습을 말한다.¹⁾

즉, ISBP는 UCP의 효력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UCP를 일상에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ISBP는 UCP의 부칙이나 해석서 또는 개정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이 아니라, UCP 500 제 13조 a항에 규정된 “國際標準銀行慣習”을 조문화하는데 기본취지를 두고 있다.

UCP 500 제 13조 a항 2문에는 “규정된 서류의 문면상 신용장 제조건과의 일치성은 이 규칙에 반영된 국제표준은행관습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shall be determined by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as reflected in these Articles.)라는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ISBP는 장차 “UCP 600”(가칭)의 개정에 도움이 될지언정, 이를 위한 잠정

1)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 Pub. No. 645, 2003. 1, p. 3.

조치가 아닌 영속적인 국제표준은행관습을 정리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ISBP는 UCP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과 신용장 실무가들의 日常業務(day-to-day practice) 사이에 부족한 공백을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국가의 법률에서는 이와 다른 관습을 강제하는 경우가 있으나, ISBP가 해당국가의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신용장에 이를 삽입하지 아니하더라도 UCP와 함께 신용장거래의 일상업무에 널리 사용될 것이다.²⁾

즉, ISBP는 국가가 이를 채택하여 적용되는 強行法規도 아니고, 신용장에서 준거조항을 두어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ISBP는 신용장거래의 국제표준관습으로서, 이를 업무에 적용하면 서류심사자들은 각자의 관습을 전세계의 다른 심사자들의 관습과 일치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처음 서류를 제시할 때부터 불일치로 인한 UNPAID의 건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미주지역의 경우는 이미 UCP 500 이후 Kozolchyk 교수(아리조나대학)를 주축으로 하여 4년간의 연구과정을 거쳐 1996년부터 IFSA(국제금융서비스협회 : 당시 USCIB)에 의하여 “SBPED”(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Letter of Credit Documents : 신용장서류심사 표준은행관습)를 제정하여 지역내의 신용장소송 건수를 크게 감소시킨 바 있다.

SBPED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번역되어 신용장 실무가들에게 중요한 書類 審査目錄(checklists)으로 인용되고 있으며, 일부 은행에서는 전자판 SBPED를 구입·설치하여 전자서류의 불일치성을 자동으로 체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기타 많은 기관에서 教育指針書로 활용되고 있다.³⁾ 또 SBPED는 이번 ICC의 ISBP 제정작업에 많은 참고자료가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2) “國際標準銀行慣習”의 發達

화환신용장 서류심사에 관한 “표준관습”(standard practice)이란 용어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금융계에서 사용되어 온 개념이다.

첫째, 1920년 뉴욕에서 발간된 “輸出商業信用狀規約”(Regulations Affecting Export Commercial Credits)에서는 서류는 1920년 뉴욕 은행상업신용장회의에

2) Donald R. Smith, “Standard Banking Practice approved”, *ICC DCINSIGHT*, Vol. 8 No. 4, 2002. 10-12, p. 1.

3) Donald R. Smith, “ICC Project on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s”, *ICC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 6 No. 3, Summer 2000, pp. 3~4.

서 채택한 “표준관습”에 일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UCP 입안자들은 이로부터 73년이 지난 1993년의 UCP 500 제 13 조 a 항에서 그 개념을 도입하여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성 여부는 “이 규칙에 반영된 國際標準銀行慣習”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셋째, 1995년 개정 UCC(미국 통일상법전) 제 5 편(신용장)은 UCP 500의 용어를 도입하여 개설인은 신용장을 정규적으로 개설하는 “금융기관의 標準慣習”(standard practice of financial institutions)을 준수하여야 하고(제 5-108 조 e 항), 또 개설인은 이 표준관습에 의한 결정에 따라 … 문면상 엄격히 일치한 제시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⁴⁾(동조 a 항).

넷째, 1995년 제정된 “유엔 保證信用狀協約”(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에서는 개설인의 의무 이행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관습표준”(generally accepted standards of international practice)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고(제 14 조 1 항), 또 서류일치성 여부의 결정은 “적용가능한 국제표준관습”(applicable international standard of practice)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제 16 조 1 항).

다섯째, 1996년 제정된 미주지역의 SBPED(신용장서류심사 표준은행관습)에서는 이 심사목록의 제목 그대로 1920년의 뉴욕신용장규약을 계수하여 “標準銀行慣習”(standard banking practice)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여섯째, 1998년 제정된 ISP 98(국제보증규칙)에서도 표준관습의 개념을 도입하여 서류일치성 여부의 결정은 ISP 규칙, 즉 “標準保證慣習”(standard stand-by practice)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제 4.01 조 b 항).

일곱째, 2002년 제정된 ISBP는 이들 주요규칙상의 명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제목을 화환신용장의 서류심사를 위한 “國際標準銀行慣習”(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이라고 결정하였다.

ISBP에서의 “국제표준은행관습”은 UCP 500 제 13 조 a 항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UCP에 반영된 은행관습을 지칭한다. 문제는 UCP에 반영되지 아니한 은행관습을 배제하여야 하는가이다. 이에 관하여는 찬반론이 있으나, UCP 500과 SBPED를 주도한 Kozolchyk 교수 등의 다수의견은 확대해석을 하고 있다.⁵⁾

4) UCC 제 5 편에서 “標準慣習”이라 함은 UCP에 반영된 국제관습, 금융기관협회가 발행한 기타 관습규칙, 국내 및 지역관습 등을 포함한다(UCC 제 5-108 조 공식주석 제 8 호).

5) Paul Turner, “Standard Banking Practice’ and the UCP”, *ICC DCINSIGHT*, Vol. 8 No. 4, 2002. 10-12, pp. 12~13.

(3) “國際標準銀行慣習”의 範圍

UCP 500의 규정에 따라 은행이 서류일치성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가능한 국제표준은행관습의 요건과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⁶⁾

첫째, 국제표준은행관습은 무엇보다도 “國際적으로” 널리 승인되어 있고,⁷⁾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들에 의하여 “正規적으로” 준수되어 온 관습을 말한다. 즉,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한다는 결론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 동안 정규적으로 준수되어 오고,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서 국제성(internationality)을 갖추고 있는 관습이어야 한다.

둘째, UCP에서는 “銀行慣習”(banking practice)을 그 표준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들 사이에 의무와 책임, 거래의 위험 및 신용장의 효용성 등에 대한 배분이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⁸⁾

셋째, 국제표준은행관습은 “UCP에 반영된”(as reflected in these articles) 관습을 전제로 한다. 이는 UCP의 명시규정만을 가리킨다고 보여지지만, 사실상 이 규칙에 조문화되지 아니한 수많은 국제은행관습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의 의미를 너무 엄격히 해석하면, 변화하는 관습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⁹⁾ 따라서 이는 UCP의 명시규정뿐만 아니라, 아직 조문화되지 아니한 국제은행관습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표준은행관습의 조문화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단체와 관련자료가 있어야 가능하는데, 이 역할을 맡아 온 국제기구는 ICC이고 여기로부터 공표된 관련자료는 결과적으로 모두 국제표준은행관습의 범주에 포함된다.

요컨대 국제표준은행관습을 구성하는 자료로는 ① 현행 UCP의 본문조항, ② UCP의 본문조항을 해설한 ICC 각종 공표물,¹⁰⁾ ③ ICC 은행위원회의 결정과 의견 및 이를 분석한 사례집,¹¹⁾ ④ ICC와 제휴한 주요 금융기관의 결정과

6) 徐正斗, “信用狀去來에서의 一致性 判斷에 관한 ‘標準慣習’의 解釋”, 「貿易商務研究」 第 11 卷, 韓國貿易商務學會, 1998. 2, pp. 347~348.

7) “國際的”(international)이라 함은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국가에 營業所를 갖고 있을 때 를 말한다. 예컨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 한 은행지점간의 거래는 국제적인 것이다.

8) Boris Kozolchik, “Re UCP Article 13(a) and the ICC’s National Banking Practices Initiative”, *Letter of Credit Update*, Vol. 11 No. 11 (1995), p. 32.

9) Joseph D. Gustavus, “Letter of Credit Compliance under Revised UCC Article 5 and UCP 500”, *Banking Law Journal*, Vol. 114 No. 1 (1997), p. 62.

10) ICC, *Documentary Credits : UCP 500 and 400 Compared*, Pub. No. 511 (1994); *ICC Guide to Documentary Credit Operations*, Pub. No. 515 (1994)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견 및 공표물,¹²⁾ ⑤ ICC의 요청에 따른 신용장분쟁 전문가그룹의 자문과 신용장법에 관한 저명한 논문자료 등이 있다. 다만 UCP가 지향하는 국제적인 목표에 부합되지 아니한 국내 또는 지역관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¹³⁾

2. ISBP의 制定과 構成

(1) ISBP 制定背景과 經緯

1993년 개정된 UCP 500은 세계적으로 信用狀紛爭을 줄이는데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으나, 이후에도 2000년까지 ICC 은행위원회에는 600개 이상의 교육 질의가 쇄도하였다. 그러나 국제표준은행관습이 어떠한 경우에 적용되는지, 은행이 관련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서류가 신용장조건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완전한지의 여부도 심사하여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없었다.

ICC 은행위원회는 2000년 5월 회의에서 이러한 問題點을 공감하고, UCP 500에 규정된 국제표준은행관습을 조문화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들 관습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규정하기 위한 作業部를 설치하였다. 동 작업부는 미국의 Donald R. Smith(시티은행)와 덴마크의 Ole Malmqvist(단스케은행)를 공동의장으로 위촉하고 10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었다(부록참조).

ICC의 동 작업부는 우선 전세계의 신용장 실무가들이 사용하는 書類審査目錄을 수집하기로 하고, ICC 각 국내위원회를 통하여 요청한 결과 45개국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10대 연구과제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즉, ① 서류의 정정(인증), ② 환어음(배서, 유전스, 정정 등), ③ 서류의 서명, ④ 서류상 수익자와 개설의뢰인의 주소표시, ⑤ 정형거래조건 표시(송장), ⑥ 수리적 계산(송장, 기타 서류), ⑦ 통합된 서류, ⑧ 운송서류(운송방식별), ⑨ 보험서류(원본, 배서, 유효기일 등), ⑩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하여 접근하였다.

ICC의 동 작업부는 각 국내위원회의 수집자료와 함께 ICC로부터 발표된 적

11) ICC,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84~1986)*, Pub. No. 434; *ibid.* (1987~1988), Pub. No. 469; *ibid.* (1989~1991), Pub. No. 494;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1989)*, Pub. No. 459; *ibid.* (1991), Pub. No. 489; *Case Studies on Documentary under UCP 500 (1995)*, Pub. No. 535;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 on UCP 500*, Pub. No. 632 등이 이에 해당한다.

12) 대표적으로 IFSA(구 USCIB)가 발행하는 "White Books"이 이에 해당하는 공표물이다.

13) J.E. Byrne, "UCP 500 Explored: The Standard of Care in Documentary Examination - Standard Banking Practice, *Letter of Credit Update*, Vol. 7 No. 6 (1991), p. 12.

용가능한 意見(Opinions), 決定(Decisions), 立場書(Position Papers) 등을 연결 시키고자 그동안의 ICC 은행위원회 공식발행물과 심지어 DOCDEX(신용장분쟁 전문가의견규칙)의 결정(Decisions) 등의 자료도 면밀히 검토하였다.

요컨대 ISBP는 2000년 5월부터 ICC 은행위원회의 작업부에 의하여 2년 6개월 동안 14차례의 작업부 회의와 4차례의 초안작업을 거쳐 208개 조항으로 구성된 최종안이 완성되고, 2002년 10월 30일의 ICC 은행위원회에서 200개 조항으로 조정되어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을 득하고 ICC 공식文書로 채택되었으며, 이는 2003년 1월부터 각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되어 있다.¹⁴⁾

(2) ISBP의 構成體系

ISBP는 UCP 500의 제 20조부터 제 47조에 규정된 심사대상서류에 관련하여 총 11장 91절 200개 조항의 세부적인 書類審査目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① 사전준비(제 1 조~제 5 조)
- ② 일반원칙(제 6 조~제 44 조)
- ③ 환어음과 만기일 계산(제 45 조~제 58 조)
- ④ 송장(제 59 조~제 72 조)
- ⑤ 해양/해상선화증권(항대항선적 적용)(제 73 조~제 99 조)
- ⑥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제 100 조~제 119 조)
- ⑦ 복합운송서류(제 120 조~제 145 조)
- ⑧ 항공운송서류(제 144 조~제 169 조)
- ⑨ 도로/철도/내수로 운송서류(제 170 조~제 182 조)
- ⑩ 보험서류(제 183 조~제 195 조)
- ⑪ 원산지증명서(제 196 조~제 200 조)

14) Donald R. Smith, *op. cit.*, Vol. 8 No. 4, 2002.10-12, p. 23.

Ⅲ. ISBP의 主要内容

1. 一般原則

ISBP 제 1 조~제 5 조에는 서류제시 이전의 신용장 개설신청과 개설에 관한 事前準備(preliminary considerations)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어 ISBP 제 6 조~제 44 조에는 환어음·송장·운송서류·보험서류·원산지증명서 등 UCP 500의 제 20 조~제 47 조에 따른 모든 심사대상서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一般原則(general principles)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① 略語(abbreviations)는 널리 인정된 것이라면 사용하여도 무방하지만, 필요한 약어의 누락이나 다른 약어의 사용은 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고,¹⁵⁾ 또 “/” 부호는 단어의 대체어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證明이나 申告가 다른 서류 내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서류가 요구되어 있는지, 證明이 해당 서류의 동일인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서류가 訂正(corrections)이나 변경된 경우 수익자 이외의 자가 발행한 모든 서류와 환어음은 그 수권된 자의 인증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서류상의 日字(dates)는 환어음·운송서류·보험서류의 경우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특히 선적전의 사실입증을 요구하는 서류의 경우 그 사실이 선적 전에 행하여졌음이 문면상 나타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UCP 운송조항에 없는 운송관련서류나 운송서류의 사본은 선적 후 제시 기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지만 늦어도 신용장의 유효기일 내에 제시되어야 하며, 또 UCP에 정의되지 아니한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서류 상호간의 不一致性은 자료의 내용보다 문언상의 모순 여부에 달려 있으며, 또 신용장에서 서류의 발행인을 지정한 경우 어딘가에 그 특정인이나 대리인이 완성하거나 서명한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수익자의 서류는 신용장의 言語(language)로 작성하여야 하고, 복수의 언

15) ICC,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 ICC Publication No. 632, 2002. 6 (이하 “ICC Publication 632”라 한다), R. 186 and 116.

어를 허용한 신용장의 경우에도 지정은행은 언어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¹⁶⁾

⑧ 서류의 數理的 計算(calculations)은 은행의 점검대상이 아니고, 은행은 신용장과 제시된 서류상의 총액만을 점검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⑨ 서류의 단순한 誤脫字(misspelling)는 용인되지만, 제품번호나 중량 또는 당사자의 성씨를 잘못 기재하면 하자가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¹⁷⁾

⑩ 서류가 둘 이상의 紙面이나 부록 또는 부속물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 반드시 이들 지면이 동일한 서류의 일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⑪ 서류가 2 통 이상의 原本(original)으로 발행된 경우, 각각 “원본”, “부분” 등의 표기가 있거나 수기 또는 타자로 작성되어 있어야 원본으로 인정된다.

⑫ 서류상의 船積貨印(shipping marks)은 신용장조건과 모순되지 아니하는 한, 추가정보를 포함하거나 간략히 표시하여도 하자로 보지 아니한다.

⑬ 署名(signature)은 환어음·증명서·신고서의 경우 필수적이며, 운송·보험서류의 경우 UCP에 따른 서명이 있어야 한다. 서명방식은 다양하게 허용되지만, 서명된 서류 일체를 사진복사나 팩스로 보내면 원본성을 상실하게 된다.

⑭ 서류는 題目(title)보다 내용이 그 기능을 완수하여야 하고, 두 가지의 서류를 통합할 경우 각 세부사항을 모두 포함한 원본 2 통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환어음과 滿期日 計算

ISBP 제 45 조~제 58 조에는 환어음(draft)의 기한, 만기일, 배서, 금액표시와 발행방법, 개설의뢰인 앞 환어음, 정정과 변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① 환어음의 期限(tenor)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고, 일람기준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 만기일의 확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기일에서의 “from”, “after” 등은 당해 일자를 제외하고,¹⁸⁾ 하나의 B/L에 복수의 선적일자가 있으면 최초의 일자, 복수의 B/L이 제시되면 최후의 B/L 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이러한 B/L 기준은 기타 운송서류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16) 다만 신용장에서 특정의 言語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서류는 어떠한 언어로 발행되더라도 이를 제시된 대로 수리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ICC DCINSIGHT, Vol. 9 No. 2, 2003. 4-6, p. 12).

17) ICC Publication 632, R. 55; ICC, *More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cation No. 489, 1991. 12 (이하 “ICC Publication 489”라 한다), Case No. 202.

18) 다만 환어음 滿期日에 사용되는 “from”(부터)은 당해 일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UCP 500의 취지(제 47 조 a 항)와 ICC 은행위원회의 기존 입장에 배치되는 것이다.

② 滿期日을 실제의 일자로 기재할 경우 신용장조건과 맞게 계산하여 표기하고, 일람후 정기출급의 경우 지급은행의 수령일자, 하자서류를 승인할 경우 인수일자를 각각 기준으로 하며,¹⁹⁾ 연지급 신용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③ 만기일자가 지급장소의 銀行休業日에 도래하면 다음의 영업일까지 연장되지만, 서류심사기간(은혜일)이나 송금소요기간 등은 이에 가산할 수 없다.

④ 환어음은 신용장이나 UCP에서 별도 허용하지 아니하는 한, 수익자가 신용장의 당사자 앞으로 발행하고, 金額은 신용장금액과 통화 및 송장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매입 등이 이루어진 경우 배서가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신용장의 요구에 따라 개설의뢰인 앞 환어음이 제시된 경우, 이는 추가적인 서류로서 수리하되 제시된 다른 서류와 모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환어음의 訂正이나 變更은 그 발행인의 인증이 있어야 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그 발행인의 인증이 있어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3. 送 狀

ISBP 제 59조~제 72조에는 송장(invoices)의 정의, 당사자의 명칭과 주소, 물품명세의 기재와 기타 송장에 관련된 일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① 신용장에서 “送狀”이라 함은 모든 종류의 송장을 포함하지만, 가송장이나 견적송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송장의 당사자는 신용장이 양도된 경우가 아닌 한, 신용장 수익자가 개설의뢰인 앞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住所의 팩스번호 등이 불일치하거나 서명·일자가 없어도 무방하지만, 국가명이 다를 정도의 주소표기는 하자가 된다.²⁰⁾

③ 物品明細는 송장내용을 조합하여 일치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도 되지만, 신용장에 없는 품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 송장은 실제로 선적된 물품의 種類만을 표시하여야 하고, 선적된 물품의 가액·단가·통화단위·정형거래조건과 준거법규·수량 등이 정확히 일치하여야 하지만, 신용장에 없는 공제액이나 할인액 등을 표시할 수도 있다.

⑤ 송장의 수량표시는 신용장에 과부족 금지조항이 있거나 포장단위·개수

19) 하자서류를 承認할 경우도 환어음의 만기일은 受領日字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ICC DCINSIGHT, Vol. 9 No. 2, 2003. 4-6, p. 11).

20) ICC Publication 632, R. 223 and 229.

단위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한, 5% 이내의 過不足이 허용되며, 또 송장금액도 수량과 단가가 일치하는 한, 5%까지 부족된 금액표시가 가능하다.

⑥ 송장의 原本과 사본은 신용장에 요구된 숫자대로 제시하고, 할부선적의 경우 각 지정된 기간과 수량의 할부계획에 따라 선적 작성하여야 한다.

4. 海洋/海上船貨證券(항대항선적)

ISBP 제 73 조~제 99 조에는 해상선화증권(marine B/L)이 요구된 경우의 원본과 서명, 본선적재 표기, 적재항과 양륙항, 수화인과 송화인, 환적과 분할선적, 물품명세, 정정표시, 운임 등의 기재에 관련된 수리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① 신용장상의 요구와 UCP 500 제 23 조에 따른 운송서류에는 항대항선적의 증명이 있는 한, “海上”(marine)이란 표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② 선화증권은 原本의 발행부수를 명시하되, “부분” 등의 표식이 있거나 “원본”이란 표식이 없어도 원본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선화증권은 署名과 운송인의 명의를 있어야 하고,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대리인의 자격과 운송인 또는 선장(함장)의 명의를 있어야 하며, 또 운송주선인 선화증권이 허용된 경우 운송주선인의 자격으로 서명하여도 된다.

④ 本船積載(on board)의 표기는 본선적재일자가 없으면 선화증권의 발행일자를, 본선적재일자가 있으면 그 표기일자를 각각 선적일자로 본다.

⑤ 신용장에 요구된 積載港과 揚陸港은 해상운송을 커버하는 한, 수령장소란과 최종목적지란에 기재하여도 되지만, 실제의 항구명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⑥ 선화증권은 신용장조건에 따라 기명식이나 指示式으로 발행하되, 송화인의 배서가 있어야 하며, 착화통지처는 그 조건에 따라 임의로 기재할 수 있다.

⑦ 환적금지의 경우 컨테이너 선화증권 등도 UCP 관련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면 수리되지 아니하고, 또 동일한 선박·항해·양륙항과 여러 적재항으로 된 선화증권은 분할선적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때 최종일자를 선적일자로 본다.

⑧ 선화증권은 “無故障”이란 단어가 없거나 삭제되었더라도 물품이나 포장의 하자에 관한 명시적인 특기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또 물품명세에 관하여도 신용장 명세와 모순되지 아니하는 일반용어로 표시할 수 있다.

⑨ 선화증권 원본의 訂正과 變更은 그 발행인이나 수권된 당사자의 인증이

있어야 하며, 비유통성 사본의 정정과 변경은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⑩ 선화증권상의 운임지급 여부와 추가비용 표시는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여야 하며, 물품의 양하지연이나 양하 후의 비용은 추가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²¹⁾

⑪ 동일한 신용장의 컨테이너 물품에 대한 複數의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 모든 선화증권이 동일한 서류로 제시되어야 수리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5. 傭船契約附 船貨證券

ISBP 제 100 조~제 119 조에는 용선계약부 선화증권(charter party B/L)이 요구된 경우의 원본과 서명, 본선적재 표기, 적재항과 양륙항, 수화인과 송화인, 분할선적, 물품명세, 정정, 운임 등에 관한 수리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① 傭船契約에 따른다는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이 요구된 경우, 동 선화증권은 반드시 UCP 500 제 25 조의 수리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②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은 原本의 발행부수를 명시하되, “부분” 등의 표식이 있거나 “원본”이란 표식이 없어도 원본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

③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은 선장(함장),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의 署名이 있어야 하고, 대리인의 경우 그 자격과 선장(함장)이나 선주의 명의를 있어야 한다.

④ 本船積載(on board)의 표기는 본선적재일자가 없으면 선화증권의 발행일자를, 본선적재일자가 있으면 그 표기일자를 각각 선적일자로 본다.

⑤ 적재항과 양륙항이 지리적 구역으로 요구된 경우, 선화증권의 적재항은 실제의 항구를 기재하여야 하나, 양륙항은 地理的 區域으로 기재할 수 있다.²²⁾

⑥ 선화증권은 신용장조건에 따라 기명식이나 指示式으로 발행하되, 송화인의 배서가 있어야 하며, 착화통지처는 그 조건에 따라 임의로 기재할 수 있다.

⑦ 분할선적금지인 경우 동일한 선박·항해·양륙항과 여러 적재항으로 구성된 두 통 이상의 선화증권도 수리되며, 이 때 최종일자를 선적일자로 본다.

⑧ 선화증권은 “無故障”이란 단어가 없거나 삭제되었더라도 물품이나 포장의 하자에 관한 명시적인 특기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또 물품명세

21) 다만 무엇이 운임의 허용된 추가비용인지 금지된 추가비용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22) ISBP에서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의 양륙항을 地理的 區域으로 표시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은 용선운송계약이 정기선 해상운송계약과는 달리 주로 도착지역이 같은 방향의 화물을 대상으로 모집한다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ICC Publication 632, R. 168).

에 관하여도 신용장 명세와 모순되지 아니하는 일반용어로 표시할 수 있다.

⑨ 선화증권 원본의 訂正과 變更은 그 발행인이나 수권된 당사자의 인증이 있어야 하며, 비유통성 사본의 정정과 변경은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⑩ 선화증권상의 운임지급 여부와 추가비용 표시는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여야 하며, 물품의 양하지연이나 양하 후의 비용은 추가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6. 複合運送書類

ISBP 제 120 조~제 145 조에는 복합운송서류(MTD)가 요구된 경우의 원본과 서명, 본선적재 표기, 적재지와 목적지, 수화인과 송화인, 환적과 분할선적, 물품명세, 정정표시, 운임과 추가비용 등에 관련한 수리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① 복합운송서류는 둘 이상의 운송방식을 커버하고 있는 한, 운송방식이나 “복합운송”이란 題目이 없어도 UCP 500 제 26 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② 복합운송서류는 原本의 발행부수를 명시하되, “부본” 등의 유사한 표시가 있거나 “원본”이란 표시가 없어도 원본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

③ 복합운송서류는 署名과 운송인/복합운송인의 명의를 있어야 하고,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자격과 대리하는 본인의 명의를 있어야 하며, 또 운송주선인 복합운송서류가 허용된 경우 운송주선인의 자격으로 서명하여도 된다.

④ 本船積載의 표기는 본선적재 등의 일자가 없으면 복합운송서류의 발행일자를, 본선적재 등의 일자가 있으면 그 표기일자를 각각 선적일자로 본다.

⑤ 수탁지·발송지·본선적재지·목적지가 地理的 區域으로 요구된 경우, 복합운송서류는 인용된 지리적 구역 내의 실제의 항구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복합운송서류는 신용장조건에 따라 기명식이나 指示式으로 발행하고, 송화인의 배서가 있어야 하며, 또 착화통지처는 임의로 기재할 수 있다.

⑦ 환적금지의 경우도 환적될 것이라거나 환적되었다는 복합운송서류는 수리되며, 또 동일한 수송수단·운항일정·목적지와 여러 원산지점으로 된 복합운송서류는 분할선적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때 최종일자를 선적일자로 본다.

⑧ 복합운송서류는 “無故障”이란 단어가 없거나 삭제되었더라도 물품이나 포장의 하자에 관한 특기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또 물품명세에 관하여도 신용장 명세와 모순되지 아니하는 일반용어로 표시할 수 있다.

⑨ 복합운송서류 원본의 訂正과 變更은 그 발행인이나 수권된 당사자의 인증이 있어야 하며, 사본의 정정과 변경은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⑩ 복합운송서류상의 운임과 추가비용의 표시는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여야 하며, 물품의 양하지연이나 양하 후의 비용은 추가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동일한 신용장의 컨테이너 물품에 대한 複數의 복합운송서류가 발행된 경우 모든 운송서류가 함께 제시되어야만 수리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7. 航空運送書類

ISBP 제 144 조~제 169 조에는 항공운송서류(AWB 등)가 요구된 경우의 원본과 서명, 인수사실 표기, 출발공항과 목적공항, 수화인과 착화통지처, 환적과 분할선적, 물품명세, 정정표시, 운임 등에 관련한 수리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① 신용장상의 요구와 UCP 500 제 27 조에 따른 운송서류에는 공대공선적의 증명이 있는 한, “航空貨物運送狀” 등의 표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② 항공운송서류는 전통의 원본이 요구되더라도 그 특성상 “送貨人用 原本”(original for shipper)만 제시되면 수리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항공운송서류는 署名과 운송인의 명의를 있어야 하고,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대리인의 자격과 운송인의 명의를 있어야 하며, 또 운송주선인 항공화물 운송장이 허용된 경우 운송주선인의 자격으로 서명하여도 된다.

④ 항공운송서류는 물품의 引受事實을 명시하고, 실제의 발송일자가 요구된 경우 그 발송일자를, 발송일자가 요구되지 아니한 경우 서류의 발행일자를 각각 선적일자로 보며, 기타 항공기의 취항일자는 고려되지 아니한다.²³⁾

⑤ 신용장에 요구된 출발공항과 목적공항은 IATA에 등록된 약식코드로 기재할 수 있으나, 지리적 구역이 아닌 실제의 공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⑥ 항공운송서류는 그 특성상 신용장조건에 관계 없이 記名式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착화통지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임의로 기재할 수 있다.

⑦ 환적금지인 경우도 환적될 것이라거나 환적될 수 있다는 항공운송서류는 수리되고, 동일한 항공기·운항일정·목적공항과 여러 출발공항으로 된 항공

23) 항공운송서류상에 표시되는 항공기의 就航日字(flight date)나 就航番號(flight number)는 발송일자의 증명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타 취항일자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신용장에서 이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선적일자의 증명으로 보지 아니한다.

운송서류는 분할선적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때 최종일자를 선적일자로 본다.

⑧ 항공운송서류는 “無故障”이란 단어가 없거나 삭제되었다더라도 물품이나 포장의 하자에 관한 특기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또 물품명세에 관하여도 신용장 명세와 모순되지 아니하는 일반용어로 표시할 수 있다.

⑨ 항공운송서류 원본의 訂正과 變更은 그 발행인이나 수권된 당사자의 인증이 있어야 하며, 동 사본의 정정과 변경은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⑩ 운송서류상의 운임지급 여부와 추가비용 표시는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되, 물품의 양하지연이나 양하 후의 비용은 추가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며, “선지급”과 “착불” 조항이 인쇄된 경우 해당 공란에 金額만 기재하여도 충족된다.²⁴⁾

8. 道路/鐵道/內水路 運送書類

ISBP 제 170 조~제 182 조에는 도로/철도/내수로 운송서류(이하 “운송서류”라 함.)가 요구된 경우의 원본과 부분, 운송인과 서명, 지시인과 착화통지처, 분할선적, 물품명세, 정정표시, 운임 등에 관련한 수리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① 신용장이 도로/철도/내수로에 의한 이동을 커버하는 운송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서류의 名稱에 관계없이 UCP 500 제 28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운송서류 原本은 원본이란 표시가 없어도 되지만, 도로서류는 “송화인용” 사본 등의 표시가 있어야 하며, 철도서류는 인증된 부분만으로도 수리된다.²⁵⁾

③ 운송서류는 운송인의 명칭과 署名이 있어야 하고,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대리인의 자격과 운송인의 명칭이 있어야 하지만, 철도서류는 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의 명칭 없이 출발역에서 수령일자만 타인되어 있어도 된다.

④ 운송서류는 고유의 특성상 신용장조건에 관계 없이 記名式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착화통지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임의로 기재할 수 있다.

⑤ 수송수단이 동일한 출발지·운항일정·목적지를 향하여 출발하더라도, 물품을 둘 이상의 수송수단에 선적하면 분할선적으로 보아야 한다.

⑥ 운송서류의 物品明細(goods description)는 신용장 명세와 모순되지 아니

24) 이는 항공운송서류가 다른 방식의 운송서류와는 달리 서류상에 운임부담금 “선지급”(prepaid)과 “착불”(collect)의 공란을 미리 印刷하여 두는 관습을 반영한 것이다.

25) 이는 道路運送書類의 경우 송화인용 사본(copy for shipper)이란 표시가 있거나, 또는 서류를 전달하는 상대방의 어떠한 표시도 없어야 하며, 또 鐵道運送書類의 경우 철도회사 인증이 있는 부분(탄소복사지 등)만으로도 원본으로서 수리된다는 의미이다.

하는 일반용어로 표시하여도 수리될 수 있다.

⑦ 운송서류 원본의 訂正과 變更은 그 발행인이나 수권된 당사자의 인증이 있어야 하며, 동 사본의 정정과 변경은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⑧ 운송서류상의 운임지급 여부는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되, 신용장 개설신청과 개설당시부터 운임 “선지급”이나 “착불” 여부를 명확히 지시하여야 한다.

9. 保險書類

ISBP 제 183 조~제 195 조에는 보험서류(insurance document)의 발행인, 담보위험, 일자, 부보금액, 피보험자와 배서 등의 수리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① 보험서류는 保險會社나 保險業者 또는 이들 대리인이 발행하고 서명한 것으로서, 필요한 경우 원본은 모두 부서된 전통이 제시되어야 한다.

② 保險仲介人의 필묵지로 발행된 서류의 경우도 보험자나 그 대리인의 자격으로 서명되어 있으면 수리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보험서류는 신용장에서 요구된 危險을 모두 담보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면책사항도 있어서는 아니되며, “전위험” 담보가 요구된 경우 그 표제와 관계 없이 “전위험” 조항이나 표기 또는 ICC (A) 조건의 보험서류이면 충분하다.

④ 보험서류는 分割擔保의 명확한 기재가 없는 한, 동일한 피보험위험에 대하여는 단일의 서류로 담보되어야 하며, 분할담보서류의 경우 각 보험자의 공동책임 또는 주된 보험자의 전액담보가 명시되어 있어야만 수리될 수 있다.²⁶⁾

⑤ 보험서류는 적어도 선적지와 목적지의 運送區間을 담보하고 있어야 한다.

⑥ 보험서류의 發行日字는 지정된 장소에서의 선적일보다 늦어서는 아니되며, 늦은 발행일자의 경우 선적일로부터 담보된다는 명시가 있어야 한다.

⑦ 보험서류상에 유효기일이 있는 경우 이는 보험금청구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물품의 송달을 위한 최종일자에 관련이 있다는 명시가 있어야 한다.

⑧ 보험서류는 신용장의 통화단위와 부보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最少金額이 없는 경우 CIF/CIP 가액의 110% 이상으로 하고 최대금액의 제한은 없으며, 부보금액의 기준은 송장청구금액이 아닌 총 물품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26) 분할담보(partial cover)의 경우 공동책임조항이나 전액담보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ICC 의견서 등에 어떠한 근거도 없는 人爲的인 概念의 조항으로 평가되고 있다.

⑨ 소손면책률조항의 보험서류는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면책률과 관계 없는 담보조건의 보험서류는 이러한 면책률조항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⑩ 보험서류는 신용장에 요구된 樣式으로 발행하고 필요한 경우 背書가 있어야 하며, 백지식 배서 등이 요구된 경우 지참인식의 보험서류도 수리된다.

⑪ 피보험자에 관한 요구가 없는 경우, 보험서류는 서류의 인도에 의한 지급 수령권이 이전되도록 수익자의 指示式으로 발행되고 배서되어 있어야 한다.

10. 原產地證明書

ISBP 제 196 조~제 200 조에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의 요구시 기본요건, 발행인, 물품명세, 수화인과 탁송인 등의 수리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① 원산지증명서는 기본적으로 물품의 原產地(origin)를 증명하는 문언이 있어야 하고, 발행인의 서명과 일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의 發行人은 신용장에서 요구된 당사자이어야 하고, 발행인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발행할 수 있다.²⁷⁾

③ 원산지증명서의 物品明細는 송장물품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신용장과 모순되지 아니한 일반용어나 다른 서류에 대한 참조문언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원산지증명서의 受貨人은 운송서류와 모순이 없어야 하지만, 운송서류가 지시적인 경우 개설의뢰인이나 기타 지정된 자를 수화인으로 할 수 있다.

⑤ 원산지증명서의 탁송인(consignor)이나 수출상은 신용장 수익자나 운송서류의 송화인과 서로 다른 당사자로 표시하여도 수리될 수 있다.²⁸⁾

IV. ISBP의 效果와 問題點

1. ISBP의 效果와 業界反應

27) 다만 원산지증명서는 수입국이나 제3국 통과시의 당국에서 요구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 발행인은 각국의 實定法에 따라 허용된 당사자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8) 예컨대 신용장 수익자가 이미 제조업자를 탁송인으로 기재한 원산지증명서상의 물품을 구매하여 선적하는 경우, 선화증권과 원산지증명서상의 送貨人은 서로 다를 수 있다.

현행의 UCP 500은 새로운 운송산업과 통신기술의 발달 및 하자서류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자 출발하였으나, 이후 하자건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소한”(minor) 하자사유나 UCP의 규정과 “표준은행관습”(standard banking practice)의 해석문제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간의 紛爭件數가 늘어났다.

이에 ISBP는 신용장서류의 준비와 심사에 관련하여 광범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화환신용장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아주 유용한 도구로서 제공될 수 있다. 수출상과 수입상의 경우, 화환신용장업무를 시작하고 거래 조건을 약정할 때부터 ISBP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또 수출상의 경우 信用狀書類를 준비할 때 ISBP를 이용할 수 있고, 또 ISBP는 서류요건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야기되어 온 많은 분쟁의 소지를 제거해 줄 것이며, 나아가 ISBP는 신용장의 세부지식을 필요로 하는 자문가, 연구가 또는 법무를 담당하는 법조인들에게 중요한 指針書로 활용될 수도 있다.

ISBP는 단순한 지침서(guideline)나 교육적 목적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ISBP는 사실상 UCP 조항의 자체는 아니지만, UCP의 본문과 ICC의 공식 의견으로부터 직접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장차 ISBP를 무시하거나 이와 반대되는 특이한 행위를 하는 銀行은 무모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²⁹⁾

현재 ISBP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한 反應은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은행의 경우 아주 사소한 하자사유로 지급거절의 애로를 경험할 때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느낀 은행들이 많았으며, 이번에 제정된 ISBP 프로젝트는 이러한 유형의 많은 瑕疵事由를 근본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9) Martin Shaw, "It will be a brave or foolhardy bank which in future takes no account of ISBP", *ICC DCINSIGHT*, Vol. 9 No. 1, 2003. 1-3, p. 13.

2. ISBP 上의 一部 問題點

ISBP는 국제적인 전문가들의 노력과 ICC 각 국내위원회의 의견 및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제정된 것이지만 몇 가지의 問題點도 지적되고 있다.

첫째, ISBP 제 26 조에서 “수익자가 발행하는 서류는 신용장의 言語로 작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기대된다.”(it is expected that …)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신용장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또 수익자 이외의 자가 발행하는 서류에 대한 언급도 없다.³⁰⁾

UCP 500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으며, 오늘날의 관습은 신용장에서 특정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서류는 어떠한 언어로 작성하여도 수리되고 있으므로 상기 규정은 부적절하게 접근하고 있다.

둘째, ISBP 제 22 조 b 항에서 “stale documents acceptable”(기일경과서류 수리가능)의 개념정의를 기술하고 있는데, ICC 은행위원회는 “stale”이란 用語를 이미 UCP 상에서 삭제하였으므로 신용장에서 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ICC Publication 371, R. 54).

따라서 이러한 용어가 사용된 신용장은 애매한 신용장으로 하고, 개설은행이 추가지시를 하도록 규정하여야 합당할 것이다(ICC Doc. 470/263).

셋째, ISBP 제 45 조 d 항에서 “부터”(from)란 單語가 기한부 환어음의 만기일에 사용되면 “이후”(after)의 의미와 같이 당해 일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ICC 은행위원회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UCP 500에는 선적기일에 관한 규정이긴 하지만 “부터”란 단어는 당해 일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제 47 조 a 항), 또 ICC 은행위원회의 기존 입장도 환어음의 매입기간과 관련하여 “이후”는 당해 일자를 제외하는 반면에 “부터”는 당해 일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ICC Publication 371, R. 294).

넷째, ISBP 제 98 조(제 119 조, 제 142 조, 제 168 조)에서 신용장이 運賃追加費用을 금지하는 경우, 선화증권은 운임추가비용이 부과되었다거나 또는 부과될 것이라는 명시가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30) René Müller, “The ISBP document, as it stands, does contain definitions that are contradictory to official Opinions”, *ibid.*, pp. 14~15.

그러나 UCP 500은 신용장에서 특별히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운임추가비용을 언급하는 선화증권도 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제 33 조 d 항), 또 서류심사자의 입장에서 선화증권상의 비용기재가 허용된 추가비용인지 또는 금지된 추가비용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상기 규정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신용장에서 금지된 비용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운임추가비용을 언급하는 운송서류도 수리하도록 규정하여야 합당할 것이다.

다섯째, ISBP 제 187 조에서 신용장의 보험담보는 명확한 分割擔保의 보험서류가 발행되지 아니하는 한, 단일의 보험서류로 제시되어야 하고 분할담보의 경우도 공동책임조항이나 전액담보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분할담보의 개념은 ICC 의견서에도 근거가 없는 인위적인 조항으로 판단된다.

V. 結 言 - 향후과제

1. ISBP의 向後課題

ISBP는 방대한 조항의 수만큼이나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며, 점차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송장에 서명과 일자가 필요한지의 여부에 관한 국내법과의 충돌문제, UCP 500 제 20 조 b 항과 원본서류의 인정문제 등과 같이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문제들이 많다.³¹⁾

ISBP는 현행의 “標準”(standard)을 반영하고 새로운 規則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므로, 향후 UCP의 개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과제도 많다.

첫째, 서류의 言語에 관한 문제이다(제 26 조). 이는 의견이 너무 분분하여 향후과제로 남아 있다. 즉, 모든 서류는 영어로 작성하도록 하는 주장과 어떠한 언어로 작성하여도 수리하도록 하는 주장이 대립되어 완전한 해결이 어렵다.

둘째, “船積貨印”에 관한 문제이다(제 36 조). 모든 서류상에 화인이 있어야 하는지, 화인과 그 세부사항에 차이가 있어도 되는지, 서류상에는 화인과 모든 세부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는지, 화인만 기재되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31) Reinhard Längerich, “I am pleased with the results and I hope future users of the ISBP will be as well”, *ibid.*, pp. 15~16.

셋째, 證明書(certificates) 등에는 서명과 일자가 있어야 하는지, 있어야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기재되어야 하는지가 문제이다(제 13 조와 제 39 조).

넷째, 送狀의 당사자 명칭과 주소에 관한 문제이다. 송장의 명칭과 주소의 모든 세부사항(전화번호 등)이 신용장에 기재되고, 송장에도 이와 일치하게 기재되어야 하는지, 완전한 주소로 기재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질의가 많다.

기타의 과제로서 서류는 반드시 表題(title)가 있어야 하는지(제 43 조), “제 3 자 서류”라고 할 때 두 당사자는 누구인지(제 22 조), 어떠한 단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대하여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표현, 예컨대 “/” 등(제 7 조)에 대한 질의가 많았으나, 이들은 향후 UCP의 개정작업에서 분명히 할 문제이다.

요컨대 ISBP의 성공여부는 그동안 ISBP 프로젝트의 참여은행이나 국가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인 신용장의 이용자들에게 UCP 500 본문의 49 개 조항이라는 범주를 넘어 하자사유의 判斷根據를 찾도록 설득해 나가는 문제에 달려 있다.

2. UCP 500의 改正方向

ISBP는 향후 UCP 500의 개정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아직 UCP 500의 개정여부에 관련한 논의동향은 대체로 慎重論이 우세이지만,³²⁾ 일정한 명분이 조성되면 UCP 500의 개정은 필연적이라고 본다.

지금까지의 명분상 주된 改正方向은 ① UCP 500 이후 종이서류, 특히 운송서류에 관련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② 종이 없는 전자식 신용장과 서류제시에 관한 보칙(eUCP)을 본문에 반영하고, ③ UCP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URR 525와 ISP98 등을 조화롭게 수용하는 규칙으로서 변모하는 것이다.³³⁾

첫째, 종이서류에 관련한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즉, 그동안 ICC 은행위원회의 공식의견, ICC 국제표준은행관습(ISBP), 미국과 유럽의 국제은행법률·관습협회의 회의자료, 신용장서류심사에 관한 표준은행관습(SBPED) 등을 활용하면 이들 문제에 관한 한 최상의 규칙이 도출될 것이다.

둘째, 電子式 信用狀規則은 URGETS(전자무역결제 통일규칙), Bolero 규약

32) Boris Kozolchyk, “Should UCP 500 be revised in the near future? No”, *ibid.*, Vol. 5 No. 4, Autumn 1999, p. 3.

33) 徐正斗, “電子貿易에 關聯한 國際信用狀慣習의 最近 動向과 課題”, 「貿易商務研究」第 15 卷, 韓國貿易商務學會, 2001. 2, pp. 112~113.

등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고, eUCP에서 전자식 서류제시에 관한 기본규칙을 이미 제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자식 신용장결제에 관한 각 국내법과의 조화를 기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셋째, UCP상에 URR 525와 ISP98을 수용하거나 調和를 기하는 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UCP와 URR을 통합하는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UCP와 ISP의 조화문제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UCP는 선적서류, ISP는 불이행진술서라는 전혀 다른 서류거래를 전제로 한 규칙이기 때문이다.

넷째, UCP 500 개정시에는 각국 제정법이나 판례법에 대한 抵觸問題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각 국내위원회에 UCP 개정시안을 사전에 통지하여 국내법과의 조정에 도움을 주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신용장거래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서류의 詐欺(fraud)에 관한 것인데, UCP 500은 사기서류에 대한 은행면책(제 15조)과 문면상 일치하는 한 지급의무(제 13조 a항)를 규정하고 있으며,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도 이 문제에 관한 한 각국의 사법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 특히 서류의 사기로 추정되는 강한 의혹이 있어도 은행은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의문이다.³⁴⁾

따라서 UCP 500 개정시에는 사기서류에 대한 行動指針을 설정해 둔다면 많은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UCP는 국내법에 우선할 수 없으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UCP를 채택할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끝으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목전의 UNPAID 사고를 줄이고, 향후 전자무역 시대에서의 UCP 500에 대한 改正方向을 예측하며, 또 개정시 합리적인 국내의 견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새로운 銀行慣習을 주도하기 위하여는 범세계적인 신용장관습의 흐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34) Reinhard Längerich, "UCP should not deal with fraud. Right? Wrong", *ibid.*, Vol. 6 No. 3, Summer 2000, pp. 9~10.

參 考 文 獻

- 梁暎煥·徐正斗, 信用狀事例研究, 三英社, 1995.
- 梁暎煥·吳元奭·徐正斗, 信用狀論, 三英社, 1993.
- 徐正斗, “信用狀去來에서의 一致性 判斷에 관한 ‘標準慣習’의 解釋”, 「貿易商務研究」第 11 卷, 韓國貿易商務學會, 1998. 2.
- 徐正斗, “電子貿易에 關聯한 國際信用狀慣習의 最近 動向과 課題”, 「貿易商務研究」第 15 卷, 韓國貿易商務學會, 2001. 2.
- Dolan, John F.,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 Commercial and Standby Credits, Revised Edition, Warren · Gorham · Lamont, 1996.
- Byrne, James E., “UCP 500 Explored : The Standard of Care in Documentary Examination - Standard Banking Practice”, Letter of Credit Update, Vol. 7 No. 6 (1991).
- Gustavus, Joseph D., “Letter of Credit Compliance under Revised UCC Article 5 and UCP 500”, Banking Law Journal, Vol. 114 No. 1 (1997).
- ICC,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1989), ICC Publication No. 459 ;
ibid. (1991), ICC Publication No. 489 ; Case Studies on Documentary
under UCP 500 (1995), ICC Publication No. 535.
- ICC, Documentary Credits : UCP 500 and 400 Compared, ICC Publication
No. 511 (1994).
- ICC, Guide to Documentary Credit Operations, ICC Publication No. 515
(1994).
- ICC,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 on UCP 500,
UCP 400, URC 522 & URDG 458, ICC Publication No. 632, 2002. 6.
-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 ICC Publication No.
645, 2003. 1.
- Kozolchyk, Boris, “Re UCP Article 13(a) and the ICC’s National Banking
Practices Initiative”, Letter of Credit Update, Vol. 11 No. 11 (1995).
- Kozolchyk, Boris, “Should UCP 500 be revised in the near future ? No”, ICC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 5 No. 4, Autumn 1999.
- Längerich, Reinhard, “I am pleased with the results and I hope future users

of the ISBP will be as well”, ICC DCINSIGHT, Vol. 9 No. 1, 2003. 1-3.

Längerich, Reinhard, “UCP should not deal with fraud. Right? Wrong”, ICC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 6 No. 3, Summer 2000.

Müller, René, “The ISBP document, as it stands, does contain definitions that are contradictory to official Opinions”, ICC DCINSIGHT, Vol. 9 No. 1, 2003. 1-3.

Shaw, Martin, “It will be a brave or foolhardy bank which in future takes no account of ISBP”, ICC DCINSIGHT, Vol. 9 No. 1, 2003. 1-3.

Smith, Donald R., “ICC Project on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s”, ICC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 6 No. 3, Summer 2000.

Smith, Donald R., “Standard Banking Practice approved”, ICC DCINSIGHT, Vol. 8 No. 4, 2002. 10-12.

Turner, Paul, “Standard Banking Practice’ and the UCP”, ICC DCINSIGHT, Vol. 8 No. 4, 2002. 10-12.

ABSTRACT

A Study on the Key-points of the ISBP and Some Problems
under its Practical Application

Seo, Jung Doo

The publication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 (ISBP) is the product by a task force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The ISBP is a practical complement to UCP 500, ICC's universally used rules on documentary credits. The ISBP does not amend the UCP. It explains, in explicit detail, how the rules are to be applied on a day-to-day basis. It fills a needed gap between the general principles announced in the rules and the daily work of the documentary credit practitioner.

By using the ISBP, document checkers can bring their practices in line with those followed by their colleagues worldwide. The result should be a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number of documents refused for discrepancies on first presentation.

Key words : ISBP,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